
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방안

2024. 12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1. 추진 배경	1
2. 추진 내용	2
가.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	3
나. 금융분야 특화 데이터 지원	5
다.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	6
3. 향후 추진계획	7
[참고]	8

1. 추진배경

- 전세계적으로 AI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금융권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
 - 특히, 주로 분류·예측에 활용되는 전통적인 AI와 달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관심 증대*
 - * 미국, 영국, 싱가포르 등 9개국 956명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, 생성형 AI를 이미 적용하였거나 적용을 고려 중인 응답자가 전체의 83%(Finastra, 2023)
- 그러나, 국내 금융회사들은 ①형식적·구체적 보안규제, ②양질의 AI 학습데이터 부족, ③불확실성 위험 등으로 AI 활용에 한계
 - ① (보안환경) GPT-4 등 AI서비스는 주로 인터넷망을 통해 해외 서버에서 제공되어, 망분리* 등 보안환경 하에서 활용이 어려움
 - *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(전금규 §15①iii)
 - ② (데이터 부족) AI 학습데이터가 대부분 일반분야, 영미권 언어로 되어있어, 금융 분야에 특화된 한글 데이터 부족
 - ③ (불확실성) 거짓정보 생성(hallucination), 편향(bias), 정보 유출 등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AI 거버넌스 및 가이드라인 불명확

현장의 의견

- ○○증권 : 내부 업무망에서 외부 인터넷망의 AI 개발을 위한 웹페이지(Hugging face, Github 등) 접속이 불가능해 AI모델·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활용 곤란
- □□은행 : 최신 오픈소스 AI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PoC(아이디어 검증) 환경 필요
- △△생명보험 : 국내 금융용어, 약어 등에 대한 AI학습용 한글 특화 데이터가 필요, AI의 성능평가·검증을 위한 데이터셋 부족, 회사 내부 데이터 활용에 한계
- ◇◇은행 : AI 이용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우므로 금융 공통의 AI 거버넌스, 가이드라인 필요

⇒ '24.3월 「금융권 AI 협의회」를 구성하여 8차례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금융회사, 유관기관, 업권별 협회 등 의견수렴 및 지원 방안 논의

2. 추진 내용

〈 추진 방향 〉

- ◇ 금융권 생성형 AI 이원(Two-track)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해
 ①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, ② 금융분야 특화 데이터 지원,
 ③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

	세부과제	내용	비고
1.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	가. 오픈소스 AI 모델, 데이터 등 선별 제공	⇒ ▶ 전문가 그룹이 선별한 오픈소스 AI 모델, 데이터 등 제공	'25년 상반기
	나. 테스트(PoC) 환경 지원	⇒ ▶ 오픈소스 AI 통합 개발 환경 지원	
	다. 내부망 설치 인프라 구축	⇒ ▶ 데이터 허브를 통해 AI 모델, 데이터 등 내부망 설치 지원	
2. 금융분야 특화 데이터 지원	가. 금융권 특화 한글 맞춤치	⇒ ▶ AI의 금융 전문성 향상을 위한 RAG용, 추가학습용 데이터 ▶ AI 윤리·성능 평가지원용 데이터	'25년 1분기 이후 단계적 지원
	나. 공익 목적 데이터	⇒ ▶ 금융사기 방지, 신용평가, 금융보안 데이터 제공 채널 일원화	'25년 상반기
3.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	가. 금융 AI 원칙 제시	⇒ ▶ 거버넌스, AI 개발·활용 단계별 원칙 제시	'25년 1분기
	나. 안내서 개정	⇒ ▶ 금융 AI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	'25년 상반기

가.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

- (현황) 생성형 AI는 인터넷망에서 제공되는 ①상용 AI와 회사 내부 시스템에 설치하는 ②오픈소스 AI로 구분



- 국내 금융회사들은 AI 활용 목적,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모두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
 - * 글로벌 데이터 및 AI 기업 SAS는 2025년에는 대규모 언어모델(LLM)과 소규모 언어모델(SLM)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분산형 AI 환경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
-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상용AI 활용은 망분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여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,
 - 오픈소스 AI의 경우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바로 설치하기 어렵고 수많은 모델이 난립*하여 성능 및 안전성 검증에 한계
 - * 세계 최대 AI 플랫폼 '허깅페이스'에 등록된 오픈소스 AI 모델은 약 110만 개

⇒ ①상용 AI는 망분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폭넓게 허용하는 한편, ②오픈소스 AI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통해 내부망에 손쉽게 설치·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AI 이원(Two-track) 활용 체계 구축

□ (추진내용) 「금융권 AI 플랫폼」을 통해 AI 설치·활용 통합지원

① (오픈소스 AI모델 선별) 금융분야에 적합한 성능과 안전성을 지닌 오픈소스 AI모델, 데이터를 전문가 그룹*이 선별하여 제공

* (구성) 은행·보험·증권 업권별 AI 전문가, 금융 유관기관(신정원, 금보원, 금결원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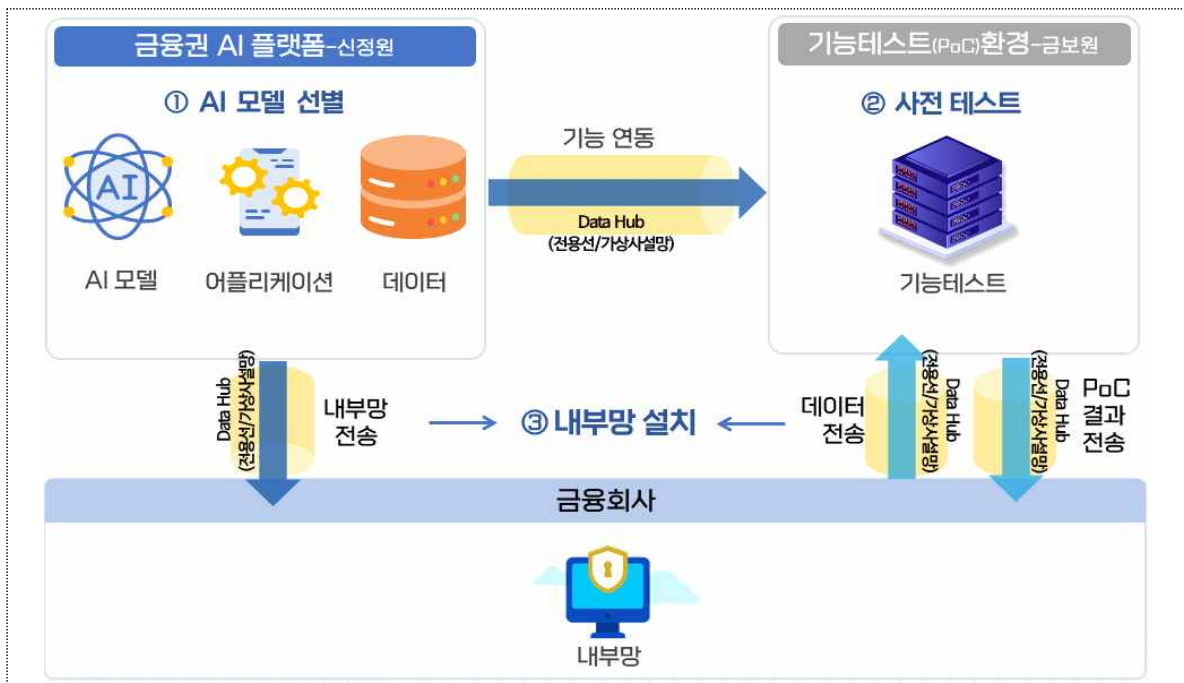
② (사전 테스트) 금융회사별 혁신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에 적합한 AI모델, 데이터를 실험·선별하기 위한 기능테스트(PoC) 환경 제공

* PoC(Proof of Concept) : 실제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기 전, 서비스·기술 등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절차

③ (내부망 설치) 전문가 그룹이 선별한 오픈소스 AI모델, 데이터를 금융사 내부망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* 구축

* 보안성이 확보된 데이터 허브망(금융보안원 제공)을 통해 금융회사 내부망과 AI 플랫폼을 연결하여 안전하고 간편하게 데이터 송·수신 가능

<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개요도 >



□ (기대효과) 금융회사가 오픈소스 AI를 내부망에 설치하여 망분리·해외서버 이용금지 등 규제 제한 없이 생성형 AI 활용 가능

○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으로, 개별 추진시 데이터 확보 및 AI 테스트 환경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AI 활용을 촉진

나. 금융분야 특화 데이터 지원

- (현황) Llama3(Meta社) 등 주요 오픈소스 AI 모델은 영미권 언어, 일반 데이터를 학습하여 한국어 능력, 금융분야 전문성 부족
 - AI 성능 향상을 위해 금융분야 한글 빅데이터가 필요하나, 개별 회사가 금융 관련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한계
 - * 특히, 편향(bias), 환각(hallucination) 등 생성형 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AI 성능·윤리 평가 데이터도 부재
 - 이상거래 탐지(FDS), 신용평가, 금융보안 등 공익 목적의 AI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기적인 공급 체계도 부재

□ (추진내용) ①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 및 ②공익 목적 데이터 제공

- ① (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) 금융 법규, 업권별 보도자료, 연수기관 교육자료 등을 기반으로 금융권 공동 활용 빅데이터 확보

⇒ 생성형 AI 개발과 활용 방식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제공

RAG*용	생성형 AI가 답변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검색·참조하는 데이터
추가학습용	금융특화 모델 개발을 위한 AI 추가학습(Fine tuning)에 활용
평가지원용	AI모델의 성능(정확성) 및 윤리(공정성) 평가에 활용

* RAG(Retrieval-Augmented Generation) : AI 모델이 외부 특화 데이터, 최신 정보 등을 검색한 후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하여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

- ② (공익 목적 데이터) 금융사기방지(금융결제원), 신용평가(신용정보원), 금융보안(금융보안원) 데이터 등 공익 목적 데이터의 제공 채널을 「금융권 AI 플랫폼」으로 일원화

- (기대효과) 오픈소스 AI 모델의 금융분야 전문성 향상, 성능 및 윤리 평가지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
 - 이상거래 탐지(FDS) 등 특성화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「금융권 AI 플랫폼」을 통해 정기적으로 편리하게 활용 가능

다.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

- (현황)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보원은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개의 가이드라인, 안내서 등을 제시*

* 「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」(21.7월), 「금융분야 AI 개발·활용 안내서」(22.8월), 「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」(23.4월)

- 생성형 AI 출현 등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 변화에 따라 가이드라인도 개정이 필요

- (추진내용) 생성형 AI기술과 내부통제 등 금융권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「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」으로 단일화

- (금융 AI 원칙) 최고경영자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, AI의 보조 수단성,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협의 최소화 등을 반영

< 금융 AI 7대 원칙(안) >

분야	7대 원칙
거버넌스	①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AI 개발·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함
	② AI 활용 전단계에서 금융·AI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
	③ 현 단계에서 AI는 업무의 보조 수단이므로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이 수행함
AI 개발 단계	④ AI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 함
	⑤ AI 설계·학습 등 전과정에서 금융 안정성 위협을 최소화해야 함
AI 활용 단계	⑥ AI 활용 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
	⑦ AI활용 시 보안성 기준 및 점검·개선 체계를 마련해야 함

- (안내서) 금융 AI 원칙의 적용, 생성형 AI 관련 보안 위협과 보안성 검증 기준 등을 포함한 상세 설명과 사례를 제시할 예정

- (기대효과) 금융회사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금융 분야 AI의 신뢰도 제고

3. 향후 추진계획

◇ 금융회사들의 신속한 지원 요청에 따라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

① 금융권 AI 플랫폼 : '25.상반기 구축

- 오픈소스 AI모델, 데이터 등 선별을 위한 전문가집단 구성 및 추진체계 마련('25.1분기)
- AI 플랫폼 시스템 및 PoC 환경 구축('25.상반기)

② 금융권 특화 데이터 : '25.1분기부터 단계적 지원

- 금융 일반·용어 등 공개 데이터, 금융권 연수자료 기반의 「말뭉치 구축·제공 시범사업」('25.1분기)
- 금융권(은행·금투·보험·여전 등) 보도자료, 금융권 연수기관 교육자료 기반 말뭉치 및 평가지원 데이터 제공('25.상반기)
- 업권별 특화 데이터 제공 확대('25.하반기)

③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: '25.상반기 완료

- 금융AI 원칙에 대한 의견수렴('25.1분기)
-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마련('25.상반기)

과제	내용	일정
① 금융권 AI 플랫폼	전문가집단 구성 및 추진체계 마련	'25.1분기
	금융권 AI 플랫폼 구축	'25.상반기
② 금융권 특화 데이터	공개데이터·연수자료 기반 말뭉치 시범사업	'25.1분기
	보도자료·연수자료 기반 말뭉치 제공	'25.상반기
	업권별 특화 데이터 제공 확대	'25.하반기
③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	금융 AI 원칙에 대한 의견수렴	'25.1분기
	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마련	'25.상반기

- (인공지능의 개념) 컴퓨터 등 기계를 활용하여 인간의 인지, 학습, 추론 능력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기술
 - (분석형 AI) 머신러닝*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학습한 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류·판단하는데 중점을 둔 AI 유형
 - *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, 그 학습을 기반으로 새로운 작업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
 - (생성형 AI) 텍스트, 이미지, 미디어 등 기존 데이터를 학습한 후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·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AI 유형
-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은 '거대언어모델'(LLM, Large Language Model)이며 상용 LLM과 오픈소스 LLM으로 분류
- (거대언어모델) 인간의 언어를 이해·학습하며 생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로 훈련된 생성형 AI 모델
 - (상용 모델) AI 전문기업(OpenAI, Google 등)에서 최신 기술과 대규모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개발한 모델
 - 대형 모델로 기본 성능이 우수하나, 사용자 필요에 맞는 모델 수정이 어렵고 서비스 활용 시 입력 정보가 제공기업으로 전송
 - * 예) GPT-4(오픈AI社), HyperClova(네이버社), Claude(앤티트로픽社), Gemini(구글社)
 - (오픈소스 모델)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공개 모델로 금융회사 내부망에 설치·활용할 수 있으며, 상대적으로 작은 컴퓨팅 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모델
 - 상용 모델 대비 모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나, 수정이 용이하여 최적화에 유리하고 외부로 정보 전송 없이 활용 가능
 - * 예) LLama(메타社), Grok(xAI社), Gemma(구글社)

① 「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」 (금융위원회, '21.7월)

- (개요)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서, AI에 대한 신뢰성·공정성 확보, 위험관리, 소비자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
 - (거버넌스 구축) AI윤리 원칙수립, AI 조직구성*, 위험 관리정책** 수립
 - * AI시스템의 전 과정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·책임·권한 등 정의, AI 윤리위원회 설치 등
 - ** 소비자 권리보장, AI모델 및 학습데이터 관리, 사고발생시 감독당국에 소통 등 포함
 - (고위험 서비스) 개인의 권익, 안전,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승인절차 및 승인책임자* 지정
 - * 최고위험관리책임자, 신용정보보호·관리인,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 유사업무 겸직 가능
 - (개인정보보호) 민감정보 등 활용시 관련법상 사전동의 획득, 비식별 조치 등 준수, 정보의 재식별, 유출, 악용가능성이 없도록 조치
 - (설명가능성) 관련법상 고객 설명의무가 있는 서비스, 고위험 서비스 등에 AI 활용시 설명가능 인공지능 기술 적용 등 설명가능성 고려
 - (소비자 권리보장) 고객에 AI 이용여부, 설명·이의제기권 등 권리구제 방안 고지, 소비자 피해 발생시 명확한 책임조항 및 손해배상 처리 절차 등 마련

② 「금융분야 AI 개발·활용 안내서」 (금융위원회, '22.8월)

- (개요)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서, AI에 대한 신뢰성·공정성 확보, 위험관리, 소비자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
 - (공통사항) 목적·적용범위, 거버넌스 구축, AI 업무위탁 시 주의사항 등
 - (기획·설계) AI 윤리원칙 검토, 의사결정 대체시 인간의 감독·통제절차 마련 등
 - (개발) 학습데이터 출처·품질·편향성 검증, 데이터 관련 컴플라이언스 준수, 설명가능한 AI 기술 도입 노력 등
 - (평가·검증) 적절한 성능·공정성 지표 선정·관리, 설명가능성 개선 노력
 - (도입·운영·모니터링) AI 이용 여부, 설명·이의제기권 등 소비자 권리구제방안 고지, 주기적인 성능관리, 데이터 오염 등 적대적 공격에 대한 보안대책 구축

③ 「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」 (금융보안원, '23.4월)

- (개요) AI 모델 개발 시, 고려해야 할 보안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하고,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체크리스트 제공
 - (데이터 수집)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수집하며, 이력 관리 수행
 - (데이터 전처리) 학습데이터 내 이상치, 변조값 등을 확인하며, 적대적 예제 데이터 등을 추가하여 AI 모델의 강건성 확보
 - (모델 설계·학습) 다양한 방식(양상불 기법, 모델 튜닝 등)을 통해 모델의 강건성을 확보하며, 사전학습 모델 활용 시 출처를 유의하여 활용
 - (모델 검증·평가) 적절한 성능지표를 통해 성능을 검증, 적대적공격 테스트, 최종 출력값 확인, 안전장치(출력 횟수 제한, 적대적 공격 탐지 등)를 통해 보안성 확보